



제27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년 9월 26일 (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9. 26.

교육사회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9. 19 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흥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가. 제안이유

- 농촌 산간 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개인 관리 지하수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하여 음용수 안전성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 효율있는 기업 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함.

## 나. 주요내용

1. 검사 시험 처리 기간 단축 (안 제2조 별표 1)
  - 수처리제 : 14일 → 12일
  - 대기·소음·진동검사 등 : 23일 → 17일
2.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 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 단 영업용과 허가용은 제외 (안 제5조)

##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가. 조례안 제정 동기

- 지난 2004년 10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달한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동 조례안 개정사유

- 첫째, 별표의 시험 종별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의약품 검사 처리기간 등 15건의 항목에 대해 검사처리 하는데 그 중 수 처리제<sup>2)</sup> 항목 등 2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운영 함.
  - 수 처리제 처리기간 : 14일 → 12일(2일 단축)
  - 대기.소음.진동검사 등 : 23일 → 17일(6일 단축)

1) 제8조 (수수료 등)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 1 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정수장의 정수처리약품 :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재(예, 응집제, 살균소독제, 방청제, 활성판 등)

- 둘째, 도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양수 능력이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은 농촌벽지 지역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 대책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의 권고사항('07.10.17)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 다. 검토결과

- 동 개정 조례안은
  -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효율성 있는 기업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시험 종별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것이며,
  - 농촌 산간지역의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충청북도 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1일 양수 능력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단, 영업용 및 허가용은 제외

제1조, 제8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 조, 제9조의 각 항의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제2조제1항 관련)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의약품등검사	15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정제 100정 이상 3. 정제 500g 이상
식품류검사	18일	1. 세균검사없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개당 200g(ml)) 2. 세균검사있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개당 200g(ml)) 3. 용량검사있는 항목: 추가 3개이상 (기본단위: 개당 200g(ml))
식품첨가물검사	18일	1. 고체: 200g 이상 2. 액체: 500g(ml) 이상 3. 기체: 1kg 이상
식품의기구·용기 및 포장류검사	18일	동일제품 6개 이상 (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18일	1. 곡류: 1kg 2. 채소류 및 과실류: 3kg 3. 축산물 및 수산물: 1kg
먹는물(샘물)검사	12일 (여니시아균검사 28일)	1. 먹는 물: 4ℓ 이상 2. 먹는 샘물: 5ℓ 이상
목욕수검사	7일	물 2ℓ 이상
수처리제	12일	중량 500g
대기·소음·진동·악취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	17일	출장조사
하천수, 호소수, 오히수 분뇨, 폐수검사	12일	1. 물 4ℓ 이상 2. 노말헵산, 페놀, 유기인계,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항목등 포함시 각 1ℓ 유리용기 별도채수
침출수검사	14일	
폐기물검사	10일	1. 액상(함유량시험): 3.5ℓ 이상 2. 고상, 반고상(용출시험): 600g 이상 3. 유기인, 테트라클로르에틸렌, 트리 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유리 용기에 채취
유해화학 물질검사	15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임상학적 세균검사	10일	1. 약물: 20cc 이상 2. 포장: 10개 이상 3. 식중독: 500g 이상 4. 대변: 20g 이상 5. 소변: 10cc 이상 6. 혈액: 5cc
토양오염도검사	20일	1. 토양유류시험 등 가. 토양 5g 채취 나. 메틸알코올 10ml 다. 30ml 용기 라. 0~4℃ 냉장상태 보관 운반 2. 토양시험용시료 500g 이상



관련법령 발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업무) ①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A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물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지역 안의 보건·환경관련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수수료 등)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④ (생략)

##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2조 (수질검사의 주기) 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 주기는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2. (생략)

② (생략)